

의안번호	2216544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2. 9.
추계번호	26F049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
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539.3억원, 2030년 539.3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2,157.1억원(연평균 539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4조제1항): 4년간 -21.3억원(연평균 -5.3억원)
 -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4조제3항): 4년간 -2,135.8억원(연평균 -534.0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4조 제1항)	-5.3	-5.3	-5.3	-5.3	-21.3	-5.3
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4조 제3항)	-534.0	-534.0	-534.0	-534.0	-2,135.8	-534.0
합 계	-539.3	-539.3	-539.3	-539.3	-2,157.1	-539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 제1항 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·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2	안 제14조 제3항 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---	-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4조 제1항 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4조 제3항 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안 제14조제1항)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
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
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2년 0.8억원에서 2023년 0.2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0.7
억원으로 증가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(2022~2024
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0.6억원
 - (재산세) 2022년 4.5억원에서 2023년 4.3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4
년 5.5억원으로 증가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

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–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평균 재산세 감면 실적: 4.8억원

□ (안 제14조제3항)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추계

○ (취득세) 2022년 272.4억원에서 2024년 276.3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여,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–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274.8억원

○ (재산세) 2022년 262.4억원에서 2023년 249.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265.3억원으로 소폭 상승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–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259.2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4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○ 적용대상: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 포함)

– 구매·판매·보관·가공·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

–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

–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

- 감면율: 취득세 25%, 재산세 25%
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- (추계방법)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- (취득세) 2022년 0.8억원에서 2023년 0.2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0.7억원으로 증가하여,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재산세) 2022년 4.5억원에서 2023년 4.3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4년 5.5억원으로 증가하여,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2]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연평균
취득세	0.8	0.2	0.7	0.6
재산세	4.5	4.3	5.5	4.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7년 5.3억원, 2030년 5.3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총 4년간 총 21.3억원(연평균 5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4조제1항)	-5.3	-5.3	-5.3	-5.3	-21.3	-5.3
- 취득세	-0.6	-0.6	-0.6	-0.6	-2.3	-0.6
- 재산세	-4.8	-4.8	-4.8	-4.8	-19.0	-4.8

나.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4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

- 적용대상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, 「산림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협연초생산협동조합
- 감면율: 취득세 100%, 재산세 100%
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□ (추계방법)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2년 272.4억원에서 2024년 276.3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여,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재산세) 2022년 262.4억원에서 2023년 249.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265.3억원으로 소폭 상승하여,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연평균
취득세	272.4	275.6	276.3	274.8
재산세	262.4	249.9	265.3	259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

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7년 534.0억원, 2030년 534.0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총 4년간 총 2,135.8억원(연평균 534.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4조제3항)	-534.0	-534.0	-534.0	-534.0	-2,135.8	-534.0
- 취득세	-261.1	-261.1	-261.1	-261.1	-1,305.5	-261.1
- 재산세	-240.9	-240.9	-240.9	-240.9	-1,204.3	-240.9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